

① 행사 개최·초대

- (Q) 기업 또는 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공직자·언론사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초청하여 식사·선물 등의 제공이 가능한지?
 - (A) 금품수수 금지 예외조항인 제8조 3항 6호에 따라 판단, 이에 따르면 그 행사의 성격이 '공식적'이고, '통상적·일률적' 범위 내에서 교통·숙박·음식물 등의 금품 등의 제공이 허용(선물은 제외)
 - '공식적 행사' 인지 여부는 주최기관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, 참석자와 행사의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, 초청기관의 공문 또는 공식초청장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 - '통상적·일률적'의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, 행사장소 및 목적, 참석자 범위, 주최자의 내부 기준 등을 고려

② 협찬·후원

- (Q) 기업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구성된 학회·기자협회 등이 주최하는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,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?
 - (A)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금지 예외조항인 제8조 3항 3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, 이에 따르면 그 협찬이 '정당한 권원'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
 - 투명한 절차에 따라 협찬비용을 마련하고, 협찬 상대방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 -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고,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여야 함

③ 기사 청탁

- (Q) 기자가 잘못된 기사 또는 의도적으로 기업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, 이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를 부탁하는 경우 부정 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?
 - (A)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거나 삭제해 달라는 요구,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는 청탁금지법 상 '부정청탁'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**제재대상이 아님**
 - 다만, 기사청탁과 관련하여 **금품 등의 수수가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됨**

④ 공무수행사인

- (Q) 공무수행사인(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, PPPD)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판단이 어려운데, 명확한 기준은 없는지?
 - (A)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와 관련된 법령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, 모호한 경우 소관 공공기관에 1차적으로 문의할 필요가 있음
 - 공무수행사인의 유형(4개) : 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, ②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, ③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, ④ 심의·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
- (Q) 정부대출·보조금 등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민간기업의 경우 임직원 전체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?
 - (A) 그 법인의 대표 및 위탁 업무를 실질적 수행·결정하는 임직원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

⑤ '직무관련성'의 명확한 기준

-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'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'를 의미
 -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,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·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(판례 99도5753)
-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·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

⑥ 자주 묻는 질문

1. 공직자등이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식사·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?
 -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야 하므로, 제공하는 사람이 공직자라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순수 민간인이면 이 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님
2.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라도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3·5·10 가액 기준 내라면 금품수수가 모두 가능한지?
 -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·부조의 목적이면 3·5·10 가액기준이 적용되나,
 - 대가성이나 이에 준하는 직접적 이해관계(직무관련성)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

※ 예시 : 인사, 감사, 예산, 평가, 계약 등 직접 관련자